

2026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학생 모집 안내

1. 국내 현장실습수업 개요

국내 현장실습수업이란 학생들의 전공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,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임

2. 운영유형 및 기간

우리 대학의 현장실습은 ‘센터모집, 사업단연계, 교수추천’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, 운영 형태에 따라 진행 방법, 기간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신청 학생의 상황에 맞게 현장실습을 신청하기 바람

| 구분 | 모집기간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실습기간 | 2026. 3. 3.(화) ~ 6. 30.(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간 내 15주 600시간 이상 - 기관별 실습 기간이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 |
| 학생신청 | <u>2026. 1. 19.(월) ~ 2. 6.(금)</u> | - 현장실습 홈페이지(http://field.cu.ac.kr) |
| 학생선발 | 2026. 2. 13.(금) | -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개별 문자 안내 |

* 사업단 연계는 사업단별(RISE사업단) 별도 안내

- [대상] 사업단별 소속 학과 및 선발 학생

3. 신청자격

| 구분 | 자격요건 |
|------|--|
| 공통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교에서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- 해당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|
| 학기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(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) |

4. 학점인정

- 가. 학점인정학기: 현장실습 수행학기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을 인정함
- 나. 현장실습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인정(Pass), 그렇지 못한 경우 실격(Fail) 처리함
- 다. 국내현장실습과 해외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계절제 2회, 학기제 1회까지만 이수 가능함
- 라. 국내현장실습, 해외현장실습 및 창업대체학점제, 일경험점프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 시까지 최대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주전공만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20학점 까지 인정, 복수전공 이수 시 주전공, 복수전공은 각 최소이수학점 기준의 1/3까지 인정함
- 마.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

| 구분 | 교과목명 | 실습기간(시간) | 교과구분 | 학점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학기제 | 국내현장실습 3 (전공선택) | 15주(600시간) 이상 | 전공선택 or 전공선택&교양선택 | 12학점 |
| | 국내현장실습 4 (교양선택) | | | |

- ※ 전문자격 자격증 취득(영양사, 방사선사, 사회복지사 등)을 위한 현장실습수업은 인정하지 않으나, 자격증 취득과 관련 없는 현장실습수업은 인정함(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어야함)
- ※ 사회봉사, 현장체험, 답사, 견학 등 단기 체험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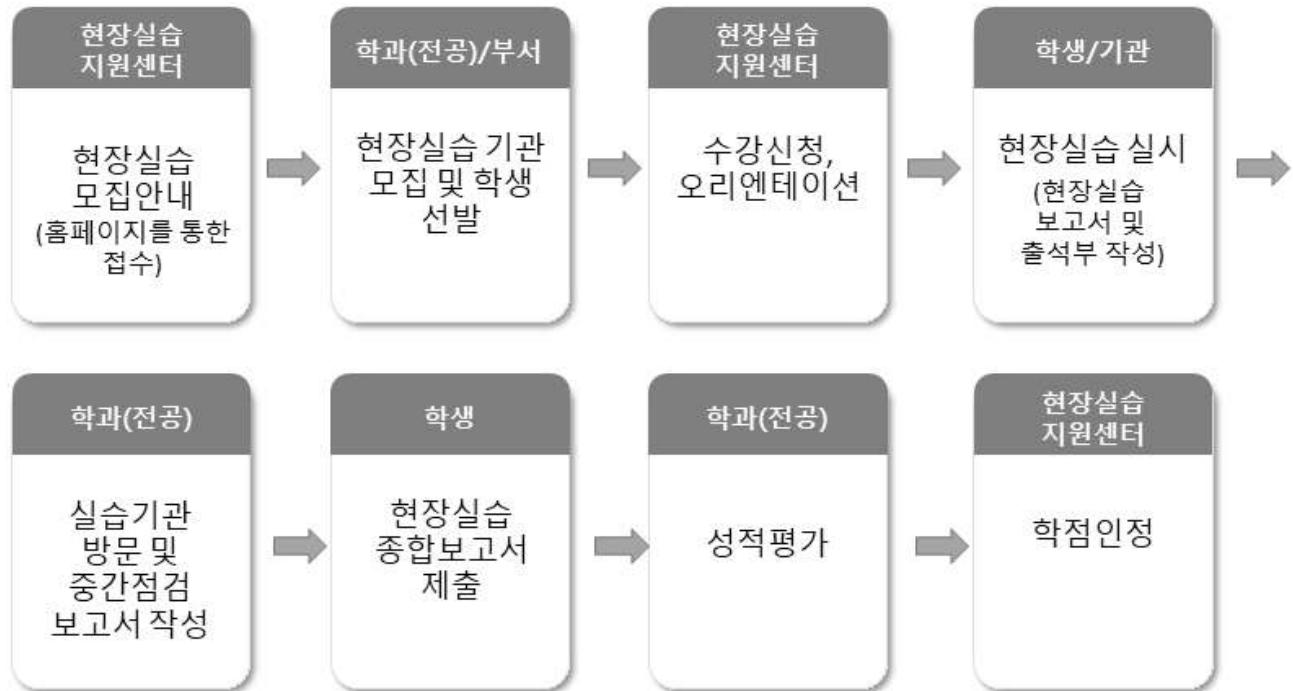
5. 신청방법

- 가.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주소: <http://field.cu.ac.kr>
- 나. 신청방법: 학생 로그인(학생지원포털 아이디, 패스워드) → 신청관리 → 이력서 등록 → 자기 소개서 등록 → 참여기업 조회 → 현장실습 신청
- ※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(<http://field.cu.ac.kr>) 운영 매뉴얼 참조(학생 로그인→커뮤니티→자료실→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매뉴얼(학생))

6. 학기제 현장실습 유의사항

- 가.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과장학금, 참인재스텔라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장학금 관련 문의는 장학지원팀(053-850-2953)으로 요망
- 나. 학기제 현장실습 중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현장실습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학점인정 및 기타 현장실습 이수에 따른 혜택을 취득할 수 없음

7. 현장실습 운영 절차



8. 유의사항

- 가.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법정공휴일, 기업 자체 휴무(단체 휴가, 창립기념일, 행사 일 등)는 현장실습 실적(인정 일수)에서 제외함
- 나.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
- 다. 해당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일반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(사이버 강좌 제외)
- 라. 포기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포기 일주일 전에 실습기관, 학과 사무실,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포기절차에 따라 현장실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함
- 마.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바.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이수를 불인정함
- 사. 실습 시작일 전까지 현장실습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함
- 아. 현장실습 기간 중 참여 불가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현장실습을 불인정함
- 자. 기타 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

9. 문의사항: 현장실습지원센터(053-850-3502)